## 2021 전주문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제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0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각 학년 부장, 학부모 대표등을 위원으로 하되, 생활교육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및 기능】 ① 학생 생활교육 및 징계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심의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하며, 학생, 학부모는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을 요구할수있다.	· 학교 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추가
제8조【폭력예방】	삭제	법으로 지정 별도운영으로 삭제 필요
제10조【두발· 복장 등 용모】	삭제	인권침해적인 내용이므로 삭제 필요
학생회 관련 조항 제24~32조, 표창 관련 조항 제43~49조	삭제	매년 변동되는 내용으로 별도로 담당자가 업무 진행
제17조 【건강에 관한 권리】 2.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금연과 생활지도의 목적으로 학생 흡연이 의심될 경우 소지품 검사 및 흡연 측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건강에 관한 권리】 2. 월 1회 생리 공결이 가능 안내 ~ 하여야 하고 <b>월 1회 생리 공결이 가능</b> 하다. ② <b>삭제</b>	
제19조【교외생활】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제19조【교외생활】 1. 본교 학생은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삭제 3.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 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자의적인 표현 (기준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므로 삭제 필요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3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생은 휴대전화 제출 동의 하에 등교 직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후에 찾아가거나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보호자 확인)은 본인이 책임 지고 관리한다.  2. 교사는 휴대전화 수거 및 반환 시 임장지도하고 보관시 시건 장치를 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4. 제1항의 사항을 어기고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반성문쓰기 등 학급규칙을 통한 지도를 받으며, 3차는 담임교사가 회수 후 학부모와 상담한 결과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23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1. 학생은 학교에 오면 전자기기(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원을 꺼서 자신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맡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은 교사의 허락을 받아 학교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학생이 시험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한경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인권침해절인 삭제 말요, 필요, 교사의 또는 건거 산지 전자기기 수도 전자 신기 수도 전자 신기 수도 전자 선기 수도 전자 신기 수도 전자 신기 수도 전자 신기 수도 전자 신기 수도 전자 신기 수도 전자 신기 수도 전자 선기 수도 전자 선기 수도 전자 선기 수도 전자 선기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수도
제38조 【학생징계의 원칙과 방법】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29조 【학생징계의 원칙과 방법】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방과후 1일 1시간 최대 30 회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생활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만약 사회 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10일 이내 하고, 출석으로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결석으로처리하여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하고, 무단결석으로처리한다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학교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징계의 내용과 기간이 빠져 있어 넣을 필요가 있음
제5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과반수 찬성할 경우 결정을 위해 7인 이상 13인 이하로 수정